

불참자처리 세칙

2007년 1월 29일 제정 2010년 12월 15일 개정 2018년 1월 9일 개정 2019년 3월 20일 개정

현행안	개정안
제 1 장 총 칙 제1조(명칭) 본 세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위아지회(조합, 지회)에서 실시하는 각종 지침과 집회 및 교육, 각종 행사에 대하여 무단으로 불참한 조합원 및 간부를 처리하기 위해 정한 현대위아지회(이하 “지회”) 불참자처리 세칙이라 한다. 제2조(목적) 본 세칙은 규칙 제10조(의무)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게끔 유도하여 전체 조합원의 형평을 유지함으로 총회 및 쟁의행위 시 전 조합원의 참여와 단결을 통한 조합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 제3조(적용범위) 본 세칙은 전 조합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, 사안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. 제4조(적용기간) 본 세칙의 적용기간은 1년(회계연도 기준)으로 하되, 대의원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. 제 2 장 처리내역 제5조(처리대상)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,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.	

현행안	개정안
제6조(처리방법) 1.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. 1) 5회(쟁의시4회) 불참 시 : 1차 경고장 발부 2) 7회(쟁의시5회) 불참 시 : 2차 경고장 발부 (지회유인물(지회게시판, 홈페이지포함) (명단공개) 3) 9회(쟁의시6회)불참 시 :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, 경조비혜택을 1년간 중단 한다. 4) 12회(쟁의시7회)불참 시 :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 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. 2.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. 3.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4. 야간자는 당일 이행하는 지침에서 제외한다. 제7조(처리대상 제외) 1. 단협에 의한 경조휴가 및 공민권 행사 해당자 2. 출장자, 공상, 산재, 휴직, 예비군, 민방위 대상자, 3. 천재지변 등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자 4. 연월차 휴가자	
부 칙	
제8조(제정 및 개정) 본 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대의원회의 재적인원 과반수이상 참석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. 제9조(시행) 본 세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10조(유권해석) 본 세칙의 미비한 점은 대의원회의 유권해석 결의에 따른다.	제8조 (시행) 본 세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9조 (제정과 개정) 본 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대의원회의 재적인원 과반수이 상 참석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.